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2026

제 3 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 #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투명성 보고: 플랫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글로벌 스탠다드와 플랫폼 책임: 세계는 어떻게 규제하는가
- # 한국형 플랫폼 규제와 입법 과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투명성 보고서 안내

Contents



이슈 분석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투명성 보고: 플랫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04

정연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문가 제언

글로벌 스탠다드와 플랫폼 책임: 세계는 어떻게 규제하는가

09

강영은(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법무팀 사내변호사)



현장 사례

한국형 플랫폼 규제와 입법 과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4

신수경(법무법인 영 변호사)



부 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투명성 보고서 안내

18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3호를 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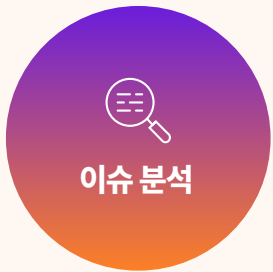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 편집부

정책전문지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 4회 발행됩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심각한 피해를 낳으며, 유통되는 순간 그 피해는 건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나의 게시물이 수십, 수백 개의 사이트와 계정으로 재게시되는 속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사후적 삭제 조치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통로인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가가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3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방향’을 짚어봅니다. 신고·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 제도가 국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미국·유럽연합·영국·호주 등 주요국은 플랫폼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형 플랫폼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 서로 다른 시선이 문제의 전체 모습을 비춰 줄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개별 게시물의 삭제·차단은 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는 사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인사이트」 3호가 플랫폼의 구조적·사전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현장과 국민,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모든 주체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투명성 보고: 플랫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도의 법적 근거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 플랫폼의 책임은 더 이상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여부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유통·재유통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 접수, 위법성 판단, 삭제·접속차단, 재게시 방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 내부의 운영 기준과 기술적 조치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플랫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조치 여부뿐 아니라, 플랫폼이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의 조치 의무와 투명성 보고 제도는 이러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서 플랫폼의 역할은 주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마련, 검색결과 제한, 게시 제한, 사전 안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사후 삭제에 그치지 않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 안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접수·처리할 내부 절차와 담당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유통방지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는 이러한 구조를 보완한다. 유통방지책임자는 사업자 내부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장치이고, 투명성 보고서는 사업자가 어떤 신고를 접수했는지, 이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유통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책임 장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14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매년 1회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구조였다면, 개정 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또한 보고 내용도 이용자 이의신청과 그 처리 결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그에 따른 조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 처리 유형·건수·조치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투명성 보고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에 관한 제한적 보고에서, 플랫폼의 콘텐츠 처리와 이용자 보호 조치 전반을 확인하는 자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2026.7.7. 시행)

제44조의 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삭제·접속차단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조치의무와 투명성 보고 제도는 플랫폼 책임을 개별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에서, 상시적 유통방지 체계와 그 이행 결과의 공개로 확장해 온 법제 변화의 산물이다. 다만 이 제도가 실제로 플랫폼 책임을 확인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투명성 보고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수행한 조치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자료이다. 주요 기재사항은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일반적 노력, 신고·삭제요청의 횟수와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절차의 마련·운영 현황, 유통방지책임자 배치 현황, 관련 교육 실시 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즉 투명성 보고서는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신고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내부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제출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 김지선, 김민지, 홍세은(2023)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90개였고, 이 중 8개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해외 기반 사업자였다. 2022년 신고·삭제요청 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집중되며, 2022년 기준 71.3%의 사업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등 일부 사업자에 편중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은 접수된 신고 건 중 70.2%를 처리하였고, 처리된 건의 대부분인 99.8%는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에 담긴 수치가 항상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연구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61.1%만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를 집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집계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걸린 시간, 미처리 사유, 게시자에 대한 제재 여부, 이의제기 절차와 처리 결과 등은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성 보고서가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플랫폼의 실제 대응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 항목과 집계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투명성 보고서가 플랫폼의 유통방지 조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 내용이 실제 조치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보고 결과가 플랫폼의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아직 보고서의 제출 여부에 비해 보고 내용의 정확성, 충실성, 활용 방식에 관한 장치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보고 내용의 산출 기준이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투명성 보고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신고건수 집계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 간 비교가 어렵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기간, 미처리 사유, 게시자에 대한 제재 여부, 이의제기 절차와 결과 등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으면 플랫폼의 실제 대응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재 체계에서도 유사한 한계가 나타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이 점에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은 참고할 만한 비교 기준을 제공한다. DSA는 투명성 보고를 단순한 공개자료가 아니라 플랫폼의 법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는 위험평가, 위험완화 조치, 독립감사, 6개월 단위 투명성 보고 등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 체계를 두고 있어, 보고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의 연결이 국내 제도보다 강하다.

따라서 국내 투명성 보고 제도의 과제는 보고서를 더 많이 제출하게 하는 데만 있지 않다. 보고 항목과 산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제출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허위·부실 보고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투명성 보고가 플랫폼 책임 이행을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하려면, 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검증 및 책임 연계 장치가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

4

플랫폼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투명성 보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보고서를 제출받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보고서가 단순히 사업자의 조치 현황을 공개하는 자료인지, 감독기관이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또는 향후 제도 개선과 플랫폼 책임 평가에 활용할 자료인지에 따라 필요한 기재사항과 검증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제도는 보고서 제출 의무를 두고 있으나, 제출된 보고서를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와 연결할 것인지는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우선 보고 항목과 산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고·삭제요청 건수, 처리 결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뿐 아니라 신고 접수 후 처리까지 소요된 시간, 미처리 사유, 게시자에 대한 조치, 이의제기 절차와 처리 결과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별 보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고, 플랫폼의 대응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보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투명성 보고가 책임 이행을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하려면 제출된 내용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별 보고서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별 보고 내용을 분석·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허위·부실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투명성 보고서가 플랫폼의 책임 이행을 보여주는 공식 자료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일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만으로는 보고 내용의 충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규모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기준으로 한 책임 부과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국경과 무관하게 유통되지만, 피해는 국내 이용자에게 발생하고 피해 지원과 수사도 국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고·삭제 대응, 자료 제출, 투명성 보고 등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대리인 제도와 국제공조는 개별 사안 대응에 필요한 장치이지만, 플랫폼의 구조적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현재 플랫폼의 역할을 신고·삭제요청 처리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의심 정황을 공적 대응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². 이 법안은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자 보호,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 면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 플랫폼 책임 논의가 유통방지 조치와 투명성 보고를 넘어 공적 대응체계와의 협력으로

2) 황정아 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 의안번호 제2217704호, 2026. 3. 24. 발의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가 플랫폼의 자율적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양상은 빠르게 변하고, 플랫폼별 서비스 구조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신고·탐지·삭제·재유포 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자율적 대응이 실질적인 책임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단순히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우수한 조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적·행정적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보고 제도는 플랫폼의 자율적 노력과 공적 책임, 그리고 정부와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연결하는 장치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플랫폼 책임: 세계는 어떻게 규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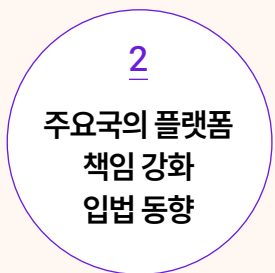
강영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법무팀 사내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제작을 그 어느 때보다 손쉽게 만들었다.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실재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성적 이미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한 전파 구조를 통해 그 유포 속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사후적 삭제 조치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성평등가족부·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통계(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10대·2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피해유형 중 유포 불안이 27.7%로 가장 높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유포되는 순간 수십, 수백 개의 사이트에 저장·재게시되며,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접수될 무렵에는 피해 확산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피해 구제와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통로인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가가 규제 설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 미국·유럽연합·영국·호주의 최근 입법 동향이 시사하는 바를 살피고자 한다.



가. 미국 : TAKE IT DOWN Act

미국은 2025. 5. 19. 연방법으로서 「TAKE IT DOWN Act」(정식 명칭: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를 시행하였다. 동법은 소셜미디어와 같이 이용자 생성 콘텐츠(이미지·영상·메시지

등)를 호스팅하는 공개 인터랙티브 플랫폼(‘관련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단순 ISP 서비스나 이메일과 같은 일대일 비공개 통신서비스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동법이 규제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적 이미지’와 ‘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이고, 이를 공유(‘publish’)한 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의 삭제의무를 피해자·대리인의 신고 접수 시로부터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단위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2일’이 아니라 ‘48시간’이므로 관련 플랫폼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삭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상시 대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플랫폼은 위 48시간 이내에 신고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재게시된 사본까지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가령 해시 매칭, 이미지 인식틀 등)를 취해야 하며, 관련 플랫폼의 법 위반 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 or practice)’으로 간주하여 고액의 벌금과 금지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동법은 공유(publish)라는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디지털성범죄물이 최초로 유통되는 경로인 비공개 포럼(커뮤니티 사이트)이나 종단 간 암호화 네트워크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나. 유럽연합 : 디지털서비스법(DSA)

유럽연합이 2023. 8. 25.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디지털성범죄물에 국한된 법률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 주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유해콘텐츠 규제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동법은 종전의 자율규제 기조를 폐지하고,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법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방지할 주의의무와, 서비스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여 규제기관에 공시할 위험평가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이용자 수와 매출 규모가 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전세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이 제시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라는 규제 개념은 이후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영국 : 온라인안전법 2023

영국이 2023. 10. 26. 제정하여 2025. 3. ~ 2025. 7. 단계적으로 시행한 「온라인안전법 2023(Online Safety Act 2023)」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성·게시·공유하는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규제 콘텐츠는 ‘불법콘텐츠’와 ‘유해콘텐츠’로 구분되는데, 불법콘텐츠는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성학대, 마약·총기 거래 등 특정 범죄와 관련된 콘텐츠를 의미하고, 유해콘텐츠는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포함한다. 특히 아동 유해콘텐츠는 음란물, 자살·자해·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 사이버괴롭힘 콘텐츠 등으로 세분화되어 그 심각성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동법이 부과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법·유해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신속한 삭제·차단 등 노출 예방조치를 취할 안전의무, 둘째,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상 위험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규제기관(OFCOM)의 검증을 받을 위험평가의무, 셋째, 이용자에게 신고 절차를 제공할 의무, 넷째, 아동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아동에 특화된 안전의무 및 위험평가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1,8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10%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 규모가 큰 플랫폼일수록 실효적인 억지력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라. 호주 : 온라인안전법 2021

호주는 2022. 1. 23. 시행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을 통해 소셜미디어플랫폼, 전자서비스, 지정 인터넷서비스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학대(cyber-abuse)’를 규제 콘텐츠로 규정하였다. 동법의 특징은 신고 접수 이후의 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에 있다. 규제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신고와 삭제를 직접 지원하는데, 예컨대 사이버불링 콘텐츠가 신고된 후 48시간 이내에 삭제되지 않으면 규제기관이 24시간 이내에 삭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가 뒤따르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호주법은 규제 콘텐츠의 범위가 사이버 폭력·학대에 한정되어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신종 기술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가. 규제 콘텐츠의 외연 확장

앞서 소개한 해외입법례는 규제 콘텐츠의 범위를 ‘위법한(illegal)’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고 ‘적법하지만 유해한(legal but harmful)’ 콘텐츠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불법콘텐츠와 유해콘텐츠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아동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유형화하여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였으며, 호주 온라인안전법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혐의의 범죄 콘텐츠를 넘어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학대’와 같이 그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콘텐츠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성범죄물의 특성상 특히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물은 유포 초기에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제 범위를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만 결부시킬 경우 이러한 회색지대의 콘텐츠에 대하여는 플랫폼이 아무런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유해콘텐츠 개념을 통해 규제망을 넓히는 해외의 입법 태도는 형사처벌의 엄격한 구성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 삭제·차단 기한의 구체화와 차등화

미국 TAKE IT DOWN Act와 호주 온라인안전법이 신고 접수 이후 삭제·차단까지의 기한을 구체적인 시간 단위(48시간)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미국법은 이 48시간이라는 기한 내에 원본뿐만 아니라 재개시된 사본까지 삭제하도록 요구하여, 형식적인 삭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확산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호주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8시간 내 미삭제 시 규제기관(eSafety Commissioner)이 24시간 이내에 삭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의 자발적 이행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이 모든 플랫폼에 일률적인 기한을 부과하기보다, 서비스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비례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형 플랫폼일수록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소규모 서비스에는 이행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삭제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플랫폼의 규모와 위험도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규제의 실효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향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사전 예방의 핵심인 위험평가체계

사후적 삭제·차단을 넘어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이를 규제기관 및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위험평가제’ 또한 핵심 동향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서비스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역시 플랫폼 스스로 위험 수준과 완화조치를 평가하여 규제기관(OFCOM)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위험평가제의 근거에는, 불법·유해콘텐츠의 확산이 개별 이용자의 일탈행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노출 방식과 같은 서비스의 구조적 설계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자극적이고 확산력이 높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어 디지털성범죄물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후적 삭제의무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위험평가와 공시 의무는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라. 실효적 제재수단 : 매출액 연동 벌금과 구조적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출액에 연동한 벌금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영국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10% 중 큰 금액을,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역시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제재의 강도도 커지도록 설계함으로써, 대형 플랫폼이 벌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치부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알고리즘 삭제명령과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문제된 개별 콘텐츠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콘텐츠의 확산을 야기한 알고리즘이나 기능 자체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과 같은 전통적 제재수단만으로는 다국적 대형 플랫폼에 대하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출 연동 벌금과 구조적 시정명령을 결합한 제재체계는 향후 규제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마. 단일 전담 규제기관의 피해자 친화적 규제 체계

단일한 전담 규제기관의 존재와 그 적극적 역할도 중요 동향이다. 일례로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는 ①피해자 신고 및 삭제 지원, ②불이행 플랫폼에 24시간 이내 삭제명령 또는 차단요청(해당 자료 접속 도메인·URL·IP 차단 등), ③중대위반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공급 중단명령·벌금 부과 청구, ④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기준에 대한 평가·점검 등을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개입한다. 이와 같이 규제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지 않고 단일한 컨트롤타워가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디지털성범죄물 등 콘텐츠의 특성상 피해자 친화적인 규제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산재된 권리구제 수단을 모색하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삭제기한의 구체화나 위험평가제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고도화하는 핵심 축이다.

가해자 처벌 및 콘텐츠 삭제·차단은 피해가 시작된 후에야 개입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후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술 환경 전반에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기본권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법·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성범죄물의 단순 유통 경로로만 머무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사전적·구조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소망한다.



한국형 플랫폼 규제와 입법 과제¹⁾: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

1

들어가며

2

현행 규제의
한계

2019년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을 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에도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플랫폼을 매개로 한 대규모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이 반복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의 최초 유입 경로 중 약 90%가 채팅앱·SNS·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조사 결과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결국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처럼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공백을 살펴보고, 해외입법례를 검토한 후, 플랫폼의 의무와 독립적 규제기관 설치를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성착취물의 존재를 '알고도' 유통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2020년 개정(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조치의무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요청 등으로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제22조의5),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제22조의6),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전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제95조의2)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집행기관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이 아무런 규율 없는 공백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글은 2025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과제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및 필자의 국회 발제문(「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방안 -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현행의 규제 체계는 실무상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위 삭제·차단 의무와 제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된 촬영물·영상물·편집물 등 시각적 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그루밍 범죄의 핵심인 성착취 목적의 텍스트 대화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현재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콘텐츠나 대화를 인지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존 체계는 어디까지나 사업자 스스로 '삭제·차단'하는 의무일 뿐,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로 연결시키는 신고의무가 아니다. 셋째, 사전적 기술조치 의무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오히려 감독이 느슨한 중소형·신생 채팅앱이나 오픈형 메신저가 새로운 유입 경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넷째, 해외에 서버를 둔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없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하여, 국내법상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실효적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도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결국 현행 규제는 시각적 성착취물의 사후적 삭제·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루밍 대화 단계의 조기 개입이나 수사기관과의 연계, 중소형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감독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다만 이 공백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해바라기센터를 법률상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성범죄를 인지한 종사자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상담 현장의 신고의무를 법제화한 의미는 있으나, 정작 콘텐츠·대화가 최초로 유통·확산되는 '현장'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신고의무가 없어, 플랫폼 단계의 신고 의무 법제화가 갖는 독자적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1) 신고·삭제 의무의 법제화

미국의 TAKE IT DOWN Act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이 48시간 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방거래위원회법상 불공정·기만행위로 간주해 건당 최대 5만 1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역시 플랫폼에 신고된 불법콘텐츠를 신속히 평가·제거할 의무와, 이용자가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디지털 경제 신뢰법(LCEN)을 통해 신고된 불법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만 플랫폼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신속한 조치를 강제해 왔다.

2)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립 감독·집행기구

영국은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라 통신감독청(Ofcom)이 아동성착취물 등 '우선 위법 콘텐츠'에 대한 사전 차단·탐지·신속 제거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 및 자료 요청, 최대 매출의 10% 또는 1,800만 파운드의 벌금 부과, 서비스 차단 명령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단일 집행기구로 기능한다. 실제로 Ofcom은 연령 확인 정보를 허위로 제출한 OnlyFans에 약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2025년에는 4chan 등 9개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호주는 이보다 앞선 2015년,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온라인안전 전담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을 설립하여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제거명령, 해외 소재 플랫폼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CSAM 제거명령, 투명성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 집행기관’이 플랫폼의 상시적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는 점이다.

3) 매출연동형 제재와 역외 적용

EU DS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연매출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액 과태료로는 담보되지 않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연동형 제재는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내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투명성 보고와 이용자 안전장치

EU와 호주 모두 플랫폼에 콘텐츠 중재 활동, 아동 이용자 현황, 연령 확인 체계 등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의 이행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며, 감독기구가 조사 대상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형 플랫폼 규제에 있어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신고의무제의 도입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를 인지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삭제·차단 의무(제22조의5)는 사업자 스스로 콘텐츠를 내리는 데 그칠 뿐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적용 범위도 시각적 촬영물·영상물에 한정되어 그루밍 대화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의무를 법제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한다면, 삭제로 끝나던 대응이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시각적 콘텐츠뿐 아니라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전조치의무 적용 기준(현행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도 낮추어 중소형 채팅앱·오픈형 메신저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

2) 신고·감독·수사를 연계하는 독립 규제기관의 설치

현재 플랫폼 콘텐츠의 삭제·차단 이행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피해자 상담·삭제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 수사는 경찰청·검찰이 각각 나누어 맡고 있다. 세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콘텐츠 삭제와 피해자 지원, 형사 수사 사이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창구를 오가야 한다. 영국 Ofcom, 호주 eSafety Commissioner처럼 신고 접수부터 조사, 시정명령, 수사 연계까지 하나의 기구가 일원적으로 관장하는 체계와 비교하면, 국내는 창구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실질적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콘텐츠 감독 기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삭제지원 기능을 연계하고, 여기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권·시정명령권·과징금 부과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수사는 경찰청·검찰이 전담하되, 이 통합 창구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연계하는 구조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피해자가 신고 이후 피의자 특정 단계에서부터 여러 기관을 오가며 벽에 부딪히는 현재의 어려움을 전담기관·플랫폼·수사기관이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매출연동 과징금 적용 범위의 확대

정액 과태료만으로는 글로벌 대형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의 매출연동 과징금(매출액 3% 이내)은 이미 국내 입법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시각적 콘텐츠의 삭제·차단 조치 위반에 한정되어 있다. 이를 신고의무 위반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 방치 행위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 서버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가 미치도록 역외 적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4) 연령 확인 의무 및 규모 무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확대

영국의 연령 확인(age assurance) 의무 사례에서 보듯,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체계 없이는 미성년자의 유해 플랫폼 접근을 막을 수 없다. 랜덤채팅앱 등에서 문자 인증만으로 연령을 임의 설정할 수 있는 현재의 허점을 보완하는 실질적 인증 방식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도 규모 요건과 무관하게 성착취 유인 위험이 높은 서비스 유형까지 확대해야 한다.

5) 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수사 협업의 고도화

위장수사 규정 도입으로 선제적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전담기관이 축적한 삭제지원·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자동 탐지 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모니터링과 신고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 키워드 필터링을 넘어 진화하는 그루밍 수법의 맥락까지 포착하는 기술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6) 국제 공조 및 해외 사업자 대응 창구의 정비

피해자나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공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 초등학교 피해자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접근한 성인 가해자로부터 장기간 성착취적 대화에 노출된 '제페토 사건'에서, 국내 수사기관이 '선례가 없다'며 지연하는 사이 해외 경찰은 신고 당일 현장에 출동해 미국 경찰과 공조했고, 플랫폼은 신고의무가 없어 조치하지 않았다. 신고의무제 도입과 함께 해외 플랫폼·수사기관과의 상시 공조 창구를 통합 규제기관 내에 두어야 한다.

결국 디지털 성착취는 피해 발생 이후의 삭제·처벌만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어, 플랫폼에 대한 예방적·구조적 규제 설계가 시급하다. 신고의무제 도입과 신고·감독·수사 연계 정비가 그 출발점이다. 처벌 강화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년의 경험이 증명한다.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장(場)' 자체를 규율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투명성 보고서 안내



중앙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프로세스 및 이용 방법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이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는 2018년 4월 3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합성물 등)은 한 번 유포되면 여러 플랫폼과 사이트로 빠르게 재유포되어, 피해자 혼자서는 그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유포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 이행 여부와 재유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요청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삭제를 지원합니다. 삭제지원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동안(기본 3년, 연장 가능) 지속적으로 유포 현황을 탐지하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상담부터 삭제요청,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 단계별 삭제지원 프로세스

- ▶ [유포 전] 유포 여부 확인 및 유포 현황 탐지
- ▶ [유포 발견 시] 삭제요청(플랫폼 사업자) / 경찰 신고 시 채증지원
- ▶ [후속 조치] 삭제 미조치 건 재요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 [삭제 이후] 재유포 여부 지속 확인

✓ 이용 안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국 대표전화 1366 (365일, 24시간) ☎ 직통 02-735-8994
온라인 게시판 상담	☎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가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URI 주소
-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관련 영상·사진(캡처본 불가)
 - ※ 캡처본 자체가 유포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
- ☞ 유포 키워드(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특정하는 게시물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 투명성 보고서가 무엇인가요?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법에 따라 자신이 불법촬영물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투명성 보고서’라고 합니다.

✓ 투명성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2025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 등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입니다.

✓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5,662건을 신고·접수받아 140,996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7

✓ 이렇게 확인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사업자별 투명성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보고서 열람하기

<https://www.kmcc.go.kr/user.do?boardId=1156&page=A02061000&dc=K02061000>